4월 28일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입니다. 산재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.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노동절 임금계산 방법 등 안내

---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고용노동부는 「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,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*로 하고 있습니다.

   * '노동절'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유급휴일

3. 관련하여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에 관해 사업장의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노동절 근무 시, 임금 계산 방법]

가. 월급제 근로자

5인 이상 사업장	5인 미만 사업장
기존 월급 + **(통상시급*노동절 근무시간*1.5배 추가 수당 지급)**	기존 월급 + **(통상시급*노동절 근무시간*1배 추가 수당 지급)**

나. 시급제 근로자

5인 이상 사업장	5인 미만 사업장
유급휴일에 따른 일당(최대 8시간) + **(시급* 노동절 근무시간*1.5배 추가 수당 지급)**	유급휴일에 따른 일당(최대 8시간) + **(시급*노동절 근무시간*1배 추가 수당 지급)**

※ 노동절 근무시간 8시간 초과 시, 초과시간에 대해 2배 가산 수당 지급

※ 노동절은 특정일<5월1일>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, 다른 날로 대체불가(대체휴일 불가). 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

수신자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,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

근로감독관 **김석원** 팀장 **유도경** 과장 **심성보** 전결 2026. 4. 27.

협조자

시행 노사상생지원과-753 접수

우 44664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 (옥동 126-1)울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52-228-1825 팩스번호 0503-8803-0447 / gprxhfm@korea.kr / 비공개(6)